

## 미국의 통일 사체제공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 I. 들어가며

미연방공화국(이하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로, 연방 정부에서 관할하는 영역과는 별도로 각 주(州)가 관할하는 영역이 구별되어 있다. 그러나 50여 개 이상의 주가 개별적으로 입법할 경우,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일법(Uniform Act)’이라는 형태로 입법 모델을 제시한 후 각 주의 상황에 따라 통일법을 주법으로 입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통일법의 작성은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 ULC)’<sup>1)</sup>에서 맡고 있다. ULC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50개 주와 D.C.,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정부가 지정한 법률가, 판사, 입법가, 법학교수 등이 연방에 통일성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의 법을 조사하고 통일법을 작성하여 주 정부가 입법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sup>2)</sup>

통일법의 목적 중 하나는 연방 정부 및 사회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법을 각 주에 입법화하는 것에 있다.<sup>3)</sup> 미국에서 기증,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체의 제공은 주법에 따르고 있으나, ULC는 연방 정부의 정책, 과학기술의 발달, 사전의료지시서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변화된 법적 환경에 각 주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사체제공에 관한 통일법인 「2006년 개정 통일 사체제공법(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이하 ‘통일 사체제공법’)」을 작성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식 가능한 장기 부족 현상은 지속되어 왔다. 연방 정부는 1984년에 제정된 「연

\* 본 원고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의 위탁과제인 이서영, 시체해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분석, 2015. 7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편집한 것임.

1)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2) *Id.* ULC의 역사, 역할, 구성 등 자세한 소개는 Uniform Law Commission, About the ULC, available at [http://uniformlaws.org/Narrative.aspx?title=About the ULC](http://uniformlaws.org/Narrative.aspx?title=About%20the%20ULC) (last accessed on June 10, 2015) 참조.

3) *Id.*



방장기이식법(National Organ Transplant Act, NOTA)의 개정을 거듭하며 장기 이식 활성화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통일 사체제공법」이 작성되기 2년 전인 2004년에는 「장기의 이식 및 회복 향상법 (Organ Donation and Recovery Improvement Act)」을 통하여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여행경비 및 부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였다.<sup>4)</sup> 「통일 사체제공법」은 연방 정부의 장기 이식 활성화 정책에 대응 가능하도록 기존의 「통일 사체법(Uniform Anatomical Gift Act, UAGA)」을 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II. 「통일 사체제공법」 작성 배경

### 1. 연혁

사체의 기증과 관련하여서는 총 세 번 통일법의 초안이 작성(draft)되었다. 최초의 「통일 사체법」은 1968년에 제정된 것이다. 이 시기는 사망을 결정하는 신경학적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망자의 사체 일부를 치료, 교육, 연구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가능해진 시기이자 최초의 성공적인 인간 심장 이식 수술과 면역억제제의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로,

장기 이식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통일 사체법」이 작성되었으며, 짧은 기간 내에 연방의 모든 주들이 「통일 사체법」을 도입하였다.<sup>5)</sup> 「통일 사체법」은 기존의 보통법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던 장기, 각막, 조직을 기증할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며, 모든 주들이 수용함으로써 장기 이식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연방 내 통일성을 이루었다.

1987년에는 「통일 사체법」의 작성 이후 변화된 환경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7년 개정법은 26개 주만이 수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968년 「통일 사체법」을 도입한 주와 1987년 개정법을 도입한 주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장기의 기증은 주 내로 국한되지 않고 연방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가 각기 장기 기증 관련 법제가 매우 다른 주에 있을 경우 장기의 적출, 이송, 보관 등에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1987년 이후 연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장기 확보에 있어 병원과 장기 구득 기관(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의 확대된 역할이 1987년 개정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기 기증 활성화 정책의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

4) 장기 이식에 관한 주요 연방법제의 제개정 연혁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onate the Gift of Life, available at <http://organdonor.gov/legislation/legislationhistory.html> (last accessed on June 10, 2015).

5) 「통일 사체제공법」은 연방 정부의 장기 이식 활성화 정책에 대응 가능하도록 기존의 「통일 사체법」을 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06년의 개정을 통하여 「통일 사체제공법」이 제정되었다.

## 2. 개정의 이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통일 사체법」은 1990년대 이후 발전한 의료와 장기 기증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방 정부의 장기 기증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통일 사체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ULC는 장기구득기관협회(Association of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 AOPO)와 함께 기존 「통일 사체법」에서 개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sup>6)</sup>

첫째, 사체의 기증에 관한 법률의 통일성 결여이다. 비록 모든 주들이 1968년에 작성된 「통일 사체법」을 도입하였으나, 이후 1987년에 개정된 「통일 사체법」은 몇몇 주만이 도입하였으며, 그나마도 부분적으로만 도입한 주도 있었고, 독자적으로 입법을

한 주도 있었다. 이러한 통일성의 결여는 법 선택(Choice of Law) 문제로 이어졌다.<sup>7)</sup>

둘째, 1980년 후반 이후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장기구득기관이 사체 기증과 관련된 행정을 주관하여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 대기자 리스트는 ‘장기 구득과 이식 네트워크(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 OPTN)’를 통하여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통일 사체법」은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연방법과 충돌하는 조항들이 존재하였다.<sup>8)</sup>

셋째, 운전면허증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기증의사 표시가 늘어가는 추세임에도 기증자 등록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sup>9)</sup>

넷째, 기존 「통일 사체법」하에서는 건강 관리에 있어 법적 대리권(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을 가진 건강관리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사후 장기 기증이 허용되지 않았다.<sup>10)</sup>

다섯째, 1987년에 개정된 「통일 사체법」은 기증 문서를 타인이 취소할 수 없으며 기증의 유효성을 위하여 타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였으나, 일부 병원이나

6) Sheldon Kurtz, The 2006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 A Law to Save Lives, Health Law Analysis (February 2007), at pp. 44-45. Kurtz는 2006년의 「통일 사체제공법」 작성에 참가한 위원이었다.

7) *Id*

8) Kurtz, at p. 45. 예를 들어, 연방법에 의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은 장기구득기관과 연계하여야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장기 이식 요청을 위한 유가족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기증자 유가족 접촉이나 기증 요청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었다. Kurtz, at p. 45.

9) *Id*

10) *Id*

11) *Id*



장기구득기관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보다 조문에서 명확하게 입법 의도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sup>11)</sup>

무엇보다, 유가족의 대부분이 기증을 원하는 경우에도 종종 소수의 반대로 인하여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망자의 의지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sup>12)</sup>

이러한 입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통일 사체제공법」은 종래의 「통일 사체법」에서 채택한 사전동의(opt-in)주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대리인이 확정적으로 기증 의사를 표할 때에만 사체의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되,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sup>13)</sup> 기증 과정에서 개인자율성(personal autonomy)을 보다 존중하도록 하였다.<sup>14)</sup> 또한, 유가족, 친구, 간병인 등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장기구득기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sup>15)</sup>

### 3. 개정의 목적

「통일 사체제공법」의 목적은 실제 법 조항에는 나타나있지 않으나, 서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일 사체제공법」은 사체 기증을 촉진시키도록 고안되었다. 둘째, 동법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를 사후로 기증할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 개인자율성을 존중하고 촉진하도록 고안되었다. 셋째, 동법은 사전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장기의 매매를 금지함으로써 이타주의에 기반을 둔 현재의 사체 기증 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 III. 「통일 사체제공법」의 주요 내용

### 1. 체계와 범위

「통일 사체제공법」은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개정 목적 하에 기존의 「통일 사체법」을 개선·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었다.

12) *Id*

13) 정의 규정에 추가된 용어는 Adult, Agent, Disinterested Witness, Donor Registry, Driver's License, Eye Bank, Guardian, Know, Minor,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Parent, Prospective Donor, Reasonably Available, Recipient, Record, Sign, Tissue Bank, Transplant Hospital 등이 있다.

14) *Id*

15) *Id*

〈표 1〉 「통일 사체제공법」의 체계

Section	Title	Section	Title
1	약명(略名)	15	구득과 사용의 조정
2	정의	16	신체 일부의 매매 금지
3	적용범위	17	기타 금지 행위
4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할 수 는 자	18	면책
5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하는 방법	19	유효성에 적용되는 법; 기증 문서의 집행에 관한 법선택; 유효성의 추정
6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 의사의 변경 또는 철회	20	기증자 명부
7	사체 기증 거부; 거부의 효력	21	사전의료지시서 상의 사체 기증의 효력
8	사체 기증 · 기증 의사 변경 · 철회의 예방적 효과	22	검시관과 구득기관 간의 협력
9	망자(亡者)의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는 자	23	검시관의 관할 하에 있는 망자의 사체 기증의 활성화
10	망자(亡者)의 사체 기증, 기증 의사 변경 또는 철회 방법	24	적용과 해석의 통일성
11	사체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자; 사체 기증의 목적	25	전자서명법과의 관계
12	조사 및 통지	26	타법 폐지
13	기증 문서의 전달 불요(not required); 검시 자격	27	시행일
14	구득기관 등의 권한과 의무	21	사전의료지시서 상의 사체 기증의 효력

법의 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사체제공법」은 주로 기증 행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타법의 폐지와 시행일 조항을 두되 이들 조항은 제목만 두고 내용은 공란으로 남겨져있다.

아울러 위의 체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통일 사체제공법」의 범위가 ‘사체’의 기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살아있는 사람도 신장, 간 등의 장기나 신체부위의 기증이 가능하지만,<sup>16)</sup> 그러한 경우에는 사체의 기증과는 다른 법적 문제들이 내

16)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나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living donation’이라 한다. Living donation은 망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 의지를 표현한 뒤 사후 장기가 사체에서 분리되어 기증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living donation의 경우 기증자가 기증 후에도 생명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증 의지의 확정, 변경, 철회 등에 있어 사체 기증과는 다른 규정을 요한다.



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sup>17)</sup>

## 2. 주요 내용

### (1) 정의 규정

#### 1) 사체 기증

「통일 사체제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체 기증(Anatomical gift)’이란 이식, 치료, 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기증자의 사후에 효력을 갖는 사체 또는 그 일부의 기증을 말한다.<sup>18)</sup>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살아있는 기증자가 살아있는 수혜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는 사체 기증에서 제외된다.

#### 2) 망자

‘망자(Decedent)’란 죽은 자로서 신체 또는 실체의 일부가 사체 기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sup>19)</sup> 이 용어는 사산된 유아(stillborn infant)와 태아(fetus)를 포함한다.<sup>20)</sup>

사산아와 태아는 종전의 「통일 사체법」

에서도 포함이 되었던 부분으로, 망자의 범위에 사산아와 태아를 포함시킴으로써 「통일 사체제공법」을 통하여 제공되는 법적 보호가 사산아와 태아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산아와 태아는 다른 기증자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 정하는 동의(consent) 절차 없이 이식, 치료, 연구,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sup>21)</sup>

태아는 그 정의상 배아(embryo)를 포함하지 않는데, 「통일 사체제공법」은 배아나 미분화세포(blastocyte)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체세포의 핵의 이식 등 현대 의료와 과학에서 가능한 연구 및 기술과 관련하여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통일 사체제공법」 자체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일 사체제공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주의 정책과 여건에 따라서는 망자라는 용어의 정의에 유도유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분화세포, 배아, 태아는 망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할 것을 「통일 사체제공법」 해설 부분에서 제안하고 있다.<sup>22)</sup>

17) 「통일 사체제공법」 서문 3면.

18) 「통일 사체제공법」 § 2 (3).

19) 「통일 사체제공법」 § 2 (4).

20) *Id* 다만, 태아의 경우 이 법 외의 법의 규정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타법에 의하여 태아는 연구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42 USC § 289g-1 & 289g-2; 42 CFR § 46.201.

21) 「통일 사체제공법」 주석 14면.

22) *Id*

### 3) 기증 문서

「통일 사체제공법」에서 ‘기증 문서(Document of gift)’란 기증자카드 또는 기타 사체 기증을 위한 기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기증자명부에 표시된 문장(statement) 또는 표식(symbol)이 포함된다.<sup>23)</sup>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뇌사 판정 시 장기의 이식에 동의함”이라는 문장 옆 빈 칸에 체크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 이를 기증 문서로 볼 수 있다.

기존의 「통일 사체법」이 기증 문서로 유언장을 명시하고 있었던 반면, 「통일 사체제공법」은 유언장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는데, 유언장은 사체 기증을 위한 ‘기록’이 될 수 있으므로, 기증 문서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 4) 기증자, 기증자명부

「통일 사체제공법」에서 ‘기증자(Donor)’란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사체 기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sup>25)</sup> ‘기증자명부(Donor Registry)’란 사체 기증, 기증에 대한 변경 사

항 및 철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sup>26)</sup>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장기구득기관과 같은 비정부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sup>27)</sup>

### 5) 안구 은행

「통일 사체제공법」에서 ‘안구 은행(Eye bank)’이란 인간의 안구 또는 그 일부의 회수(Recovery), 스크리닝, 시험, 처리, 저장, 분배할 수 있도록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라 면허인가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한다.

### 6) 사체 부위

「통일 사체제공법」에서 ‘사체 부위(Part)’란 장기, 안구, 조직을 포함한다.<sup>28)</sup> 이 정의는 사체 부위를 “장기, 조직, 안구, 뼈, 동맥, 혈액, 체액 또는 기타 인체의 일부”로 규정하던 기존의 정의에 비하여 좁아졌으나, 의학적으로 뼈, 혈액, 정자 등도 조직에 포함되므로 ‘조직’이라는 용어만을 남겼다. 사체 전체는 사체 부위의 정의에서 배제된다.<sup>29)</sup>

23) 「통일 사체제공법」 § 2 (6). 운전면허증, 신분증, 기증자명부의 정의는 각각 같은 섹션 (9), (13), (8)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4) 「통일 사체제공법」 주석 15면.

25) 「통일 사체제공법」 § 2 (7).

26) 「통일 사체제공법」 § 2 (8).

27) 「통일 사체제공법」 주석 15면.

28) 「통일 사체제공법」 § 2 (17).

29) 「통일 사체제공법」 주석 16면.



## 7) 의사, 기사

「통일 사체제공법」에서 ‘의사(Physician)’는 주 법에 따라 의료행위 또는 정골요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sup>30)</sup> ‘기사(Technician)’<sup>31)</sup>란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라 면허, 인가 또는 감독을 받는 적절한 기관이 사체 부위를 적출 또는 처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는 자를 의미하고, 기사에는 안구적출기사(enucleator)<sup>32)</sup>가 포함된다.<sup>33)</sup> 즉, 「통일 사체제공법」은 장기 이식을 위하여 장기 적출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로 의사와 기사를 두고 있다.<sup>34)</sup>

### (2) 주요 규정

#### 1)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는 자(Section 4)

「통일 사체제공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사체 기증의 활성화인 만큼, 「통일 사체제공법」은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즉, 기존에는 성인만이 사체 기증을 할 수 있었던 반면, 「통일 사체제공법」은 자립한 미성년자나 주 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미성년자도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up>35)</sup>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증자의 대리인(agent), 부모, 후견인 등이 기증자의 생전에 기증자를 대신하여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sup>36)</sup>

#### 2)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하는 방법 (Section 5)

사체 기증 집행요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통일 사체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통일 사체제공법」은 Section 5에서 기증 의사를 기록할 수 있는 문서에 주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기증자 명부를 추가함으로써

30 「통일 사체제공법」 § 2 (20).

31 사체 기증과 관련된 문맥상의 기사는 장기적출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몬타나 주는 장기 기증에 관한 법에서 안구 적출에 있어 안구적출기사의 역할과 안구적출기사 인증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자세히는 Montana Statute Annotated § 72-17-311 Eye enucleations - enucleators - qualifications 참조), 이로 미루어보아 "Enucleator"는 안구적출기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통일 사체제공법」 § 2 (29).

34 「통일 사체제공법」 § 14 (j).

35 「통일 사체제공법」 § 4 (1)(A)&(B). 다만, § 8에서는 미성년의 기증 의사 또는 기증 거부 의사는 부모에 의하여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자립 미성년자가 운전면허증에 기증 의사를 표하였을 경우 이는 유효한 기증 의사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성인 기증자의 생전 기증 의사와는 달리 미성년 기증자의 생전 기증 의사는 부모에 의하여 변경 또는 철회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36 「통일 사체제공법」 § 4 (2)-(4).



사체 기증의 요식을 완화시켰다.<sup>37)</sup>

또한, 생전에 공개되지 않은 유언에 사체 기증 의지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유언의 집행 시기 등의 이유로 사체의 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언이 집행되기 전에도 사체 기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기증자의 사후에 유언이 무효화 되더라도 사체 기증은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sup>38)</sup>

### 3) 사체 기증·기증 의사 변경·철회의 예방적 효과(Section 8)

「통일 사체제공법」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은 Section 8의 사체 기증 의사와 기증 의사의 변경 또는 철회의 예방적 효과(preclusive effect)에 관한 부분이다. 「통일 사체제공법」의 목적 중의 하나는 사체 기증과 관련하여 기증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생전 기증자의 사체 기증 의사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고자하는 입법취지가 Section 8에 반영되어 있다.

Section 8은 원칙적으로 “기증자의 분명한 반대 의사가 없는 한, Section 5에 따라 기증

자가 신체 또는 신체 일부에 대하여 기증 의사를 표한 경우 또는 Section 6에 따라 기증 의지를 변경한 경우에 기증자 외의 사람은 기증자의 신체 또는 신체 일부에 대한 사체 기증, 기증 의사의 변경, 기증 의사의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9)</sup> 망자의 생전에 기증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기증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도 망자의 사후에 제3자가 사체 기증, 기증 의사의 변경, 기증 의사의 철회를 할 수 없다.<sup>40)</sup>

이러한 규정은 기증자의 사체 기증 의지에 대한 기증자의 자율적 판단을 주 정부 및 유가족이 최대한 존중하도록 고안된 장치로, 기증자의 사후 타인이 임의로 기증자의 기증 의지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통일 사체제공법」은 기증자가 생전에 표한 기증 의사를 유가족이 승인, 변경 또는 철회할 권한 및 권리를 배제시킴으로써<sup>41)</sup> 기증자의 기증 의지와 유가족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기증자의 의지가 우선시 되게 되었다.<sup>42)</sup>

Section 8은 또한 사체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 의사의 철회가 기증 거부(refusal)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

37) 「통일 사체제공법」 § 5 (a)&(b).

38) 「통일 사체제공법」 § 5 (d).

39) 「통일 사체제공법」 § 8 (a). 다만, 같은 Section의 (g)와 (f)가 적용되는 경우는 원칙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40) 「통일 사체제공법」 § 8 (c).

41) 「통일 사체제공법」 주석 30면.

42) 이 규정은 망자의 시신에 대한 유가족의 재산권(Property right)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장기 기증을 위한 의학적 절차 이후 망자의 시신 처리 방법에 대한 결정권 등 주 법에서 허용하는 다른 재산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Id.*



다.<sup>43)</sup> 즉, 망자의 생전에 망자 또는 Section 6에 따라 망자 이외의 사람이 사체 기증 의지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Section 4 또는 9에 따라 망자의 사체를 기증할 법적 권한이 있는 자가 망자의 사체를 기증할 수 있다.

다만, Section 8은 미성년자에 한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생전 기증 의지 또는 기증 거부 의지가 부모에 의하여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sup>44)</sup>

#### 4) 망자(亡者)의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는 자 (Section 9)

「통일 사체제공법」은 기증자의 생전과 사후 모두의 경우에 대하여 사체 기증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전에는 기증자 자신을 포함하여 기증자의 대리인, 부모, 후견인 등이 경우에 따라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Section 9에서는 사체 기증 또는 기증 거부표시를 하지 않은 망자의 신체 또는 신체 일부를 이식, 치료, 연구, 교육 목적으로 기증할 수 있는 자를 나열하고 있다.<sup>45)</sup> 총 10개 종류의 사람이 기증 의사를 포함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 순어로 나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망자의 사망 시 망자의 대리인(agent)으로, 망자의 사망 직전 Section 4(2)에 따라 사

체 기부를 할 수 있었던 자, ② 망자의 배우자, ③ 망자의 성인 자녀, ④ 망자의 부모, ⑤ 망자의 성인 형제, ⑥ 망자의 성인 조손, ⑦ 망자의 조부모, ⑧ 망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한 성인, ⑨ 망자의 사망 시 망자의 후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 ⑩ 망자의 유해 처분(dispose) 권한을 가진 자의 순이다.<sup>46)</sup>

이 리스트는 종래의 「통일 사체법」에서 확장된 것으로, 종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망자의 대리인, 성인 조손, 특별한 친분이 있는 지인 등이 망자의 사체 또는 사체 일부를 기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체 기증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 IV. 「통일 사체제공법」의 평가

「통일 사체제공법」은 이식 및 치료용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장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체 기증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확장하고, 기증의 요식을 완화시켰으며, 장기의 회수와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행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통일 사체법」에서 불명확했거나 잘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명

43) 「통일 사체제공법」 § 8 (b) & (d).

44) 「통일 사체제공법」 § 8 (g) & (h).

45) 「통일 사체제공법」 § 9 (a).

46) *Id*

확하게 함으로써 사체 기증 과정에서 기증을 좌절시킬 수 있는 장애요소들을 배제하고 사체 기증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결과 「통일 사체제공법」은 장기의 이식과 관련된 여러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sup>47)</sup> 2015년 6월 현재 58개 주(D.C.,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포함)가 「통일 사체제공법」을 주 법으로 제정(enacted)하였고 펜실베이니아주가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sup>48)</sup>

다만, 학계에서는 「통일 사체제공법」이 기존의 이타주의에서 벗어나 실리주의로 이식을 위한 장기 구득에 접근하고 있으며, 시한부 환자의 간호(end-of-life care)와 관련하여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sup>49)</sup> 「통일 사체제공법」은 2006년 작성 당시 Section 14에서 환자의 연명치료거부에 대한 의사가 사체 기증 목적을 위한 연명치료의 거부와 동일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비판으로 인하여 2007년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Section 14(b)는 사체 기

증을 한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로 연명치료 거부를 표한 경우, 시한부 환자의 장기 기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단은 연명치료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전의료지시서와 사체 기증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담당 의사와 환자 간에 그러한 충돌을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을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sup>50)</sup>

## V. 시사점

「통일 사체제공법」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도입한 사체 기증에 관한 법률로, 개인의 사체 기증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타인이 그러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또한, 사체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이 가능한 자의 범위와 기증 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소수 유족의 반대로 인하여 다수 유족의 기증 의사가 좌절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47) 이 법을 지지(endorse)한 단체로는 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 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erican Society of Cataract and Refractive Surgery, Association of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 Cornea Society, Eye Bank Association of America, National Kidney Foundation,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등이 있다.

48) Uniform Law Commission, Legislation, available at [http://www.uniformlaws.org/Legislation.aspx?title=Anatomical+Gift+Act+\(2006\)](http://www.uniformlaws.org/Legislation.aspx?title=Anatomical+Gift+Act+(2006)) (last accessed on June 10, 2015).

49) Joseph L. Verheijde, et al., The United States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New challenges to balancing patient rights and physician responsibilities, *Philos Ethics Humanit Med.* 2007. 2. 19. 이 외에도 「통일 사체제공법」과 시민권의 충돌 등에 관한 문헌이 다수 발간되었다.

50) 「통일 사체제공법」 § 14 (b).



합리적인 기준으로 부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일부 미성년의 사체 기증이 유효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증된 사체의 효율적인 회수, 관리, 분배를 위한 행정적인 체계를 명문화하여 기증자 명부가 없는 주에도 기증자명부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통일 사체제공법」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시체 해부 및 장기 이식 관련 법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해부되는 시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보존법’)」은 1964년에 제정된 뒤 현재까지 그틀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이어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 년 간에 걸쳐 「시체해부보존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 및 교육 목적의 시체 해부는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그러한 교수의 지도 하에 있는 의학 전공 학생이 할 수 있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좁다. 「통일 사체제공법」의 경우 전공과 관계없이 주 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자와 장기 또는 안구의 적

출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힌 적출기사가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닌 사체로부터의 장기 적출의 경우 사체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이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자도 숙련된 기술과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체해부보존법」상으로는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 유가족의 서면 승낙이 필요하다.<sup>51)</sup> 그러나 기증자가 「장기이식법」에서 정하는 장기 뿐 아니라 사체 전체를 기증하고자 할 때, 본인의 기증 의사가 민법상의 요식에 따른 유언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의사가 존중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대학병원 등에서 유가족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사체가 기증된 경우에도 시체 해부를 회피하고 있다.<sup>52)</sup> 「시체해부보존법」과 유사하게 「장기이식법」에서도 기증자가 생전에 본인의 뇌사 또는 사망시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하였을 경우, 그 적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적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sup>53)</sup> 즉, 기증자의 기증 의지보다 유가족의 거부 의지가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51) 「시체해부보존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52) 김원식, “인체해부실습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한계”,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24권 제1호(2011), 44면.

있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망인의 주검에 대한 유가족의 집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식, 치료,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충분한 수의 사체와 장기를 확보하기 위하고자 한다면 「통일 사체제공법」에서와 같이 사체 및 장기의 기증에 있어 기증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실효성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체 기증 의사를 유언을 통하여 표할 경우, 유언의 집행 시기 등에 따라 사체와 장기가 적절한 때에 적출 또는 해부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는 ULC의 판단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며, 유언 외의 간소화된 서식으로도 유효한 기증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요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이식법」제14조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장기 등 기증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장기 기증 의사를 철회할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다.<sup>53)</sup> 「통일 사체제공법」에서는 장기 기증을 한 자가 기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기증자명부에 그 기증 의사 표시와 철회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도록 하고, 기증자의 사후에도 법적 지위를 갖춘 자가 기증자의 사체를 기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기증자의 기증 의사 철회

(revocation)는 기증 거부(refusal)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기이식법」에서 ‘철회’라는 용어는 기증 의사를 표한 자가 후에 마음을 바꾸어 기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사용되고, ‘거부’라는 용어는 유가족이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기증자의 자율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통일 사체제공법」에서와 같이 철회와 거부의 정의와 범위를 명시하고, 기증자의 생전 철회와 사후 기증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는 연명치료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와 사체 또는 장기기증의사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서 영**  
(한동대학교 CK 교수)

53) 「장기이식법」제22조 제3항 1호.

54) 「장기이식법」제14조 5호.



### 참고문헌

김원식, “인체해부실습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한계”,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24권 제1호(2011).

Sheldon Kurtz, The 2006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 A Law to Save Lives, Health Law Analysis (Feb. 2007).

Joseph L. Verheijde, et al, The United States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New challenges to balancing patient rights and physician responsibilities, Philos Ethics Humanit Med. 2007; 2: 19.

Uniform Law Commission, available at <http://uniformlaws.org>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rgan Donor, available at <http://organdonor.gov>.